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2월 6일, 임종득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2월 7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 9. 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11.25.)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가결)

제8차 국방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임종득의원)

현행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중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기간이 2021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지급신청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으나, 아직 퇴직급여금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있어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지급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2항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개정안은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일부 대상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이미 종료된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기간(2021년 6월 30일까지)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안 제6조),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기간 연장(2028년 6월 30일까지)에 따라 퇴직급여금 심사를 위한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3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은 <u>2021년 6월 30일까지</u> 하여야 한다. 부칙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u>2028년 6월 30일</u> ----- ----- 부칙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 ① (생략) ② 위원회는 <u>2025년 6월 30일까지</u> 존속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u>2032년 6월 30일</u> ----- -----

* 부칙은 법률 제16029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부칙을 개정하는 것임

□ 1960년에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1960년 이후 전역한 군인은 퇴직급여금을 지급 받았으나 1959년 이전에 전역한 군인은 제외되었음.¹⁾

이때 제외된 군인에게도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4년에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4차에 걸친 개정을 통해 최초 접수된 2005년부터 최종 접수된 2021년까지 총 61,160명에게 896억원의 퇴직급여금이 지급되었음.

1) 군인연금법은 1963년 1월 28일 제정·시행되었음.

[퇴직급여금 지급 결과]

구 분	신청기간	접 수(A)	지급 결정		
			인원(B)	금 액	인용률(A/B)
계		61,160명	47,822명	896억 원	78.2%
1차 접수	'05. 7. 1. ~ '06. 6.30.	41,521명	41,815명	787억 원	77.3%
2차 접수	'07. 7.27. ~ '08. 6.30.	12,541명			
3차 접수	'12. 1. 1. ~ '12.12.31.	1,341명	875명	17억 원	65.2%
4차 접수	'19. 6.25. ~ '21. 6.30.	5,757명	5,132명	92억 원	89.1%

자료: 국방부 보건복지관

□ 그러나 퇴직급여금 지급대상자의 대부분이 85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퇴직급여금 지급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상당수의 미신청자가 존재함.

국방부에 따르면, 지급 신청기한 경과 후에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인원이 14,000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²⁾ 신청기간 연장에 따른 퇴직급여금 추가 재정소요(2026~2031년)는 총 131.6억원(7,000명³⁾, 1명당 평균 약 188만원 수준)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음.

2) 국방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퇴직급여금 미지급자 1만 4,000명을 식별하였다고 함.

- '18년 이후 보건부 신규등록 유공자 중 퇴직금 미지급자 6천여 명
- 6.25무공훈장 찾아주기조사단 발굴 수훈자 중 퇴직금 미지급자 8천여 명

3) 신청 예상인원 14,000명 중 50%가 지급 인용될 것으로 가정함.

[퇴직급여금 지급시 추가 재정소요 : 2026 ~ 2031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합 계
지급 대상	500명	2,000명	2,500명	1,000명	500명	500명	7,000명
1인당 지급액(만원)	188만원	188만원	188만원	188만원	188만원	188만원	-
퇴직급여금 지급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 (안 제5조)	9.4억원	37.6억원	47억원	18.8억원	9.4억원	9.4억원	131.6억원

자료: 국방부 보건복지관

- 이에 개정안은 지급 신청기간을 재부여함으로써 지급 대상자들이 2년 이상 군에 복무한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노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이전에 이미 4차례에 걸쳐 신청기간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당사자 및 그 유족이 그동안의 퇴직급여금 지급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신청기한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신청기간 연장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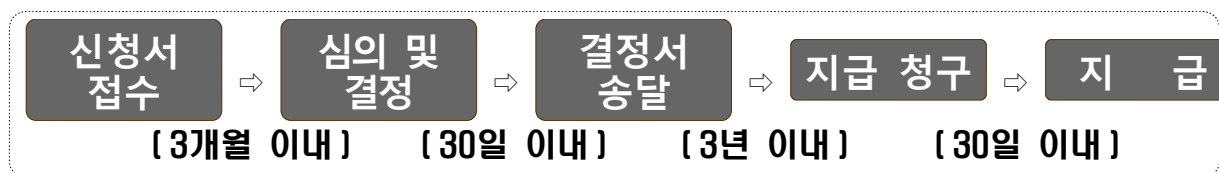
구분	제정 법률 제7199호	제1차 개정 법률 제7431호	제2차 개정 법률 제8546호	제3차 개정 법률 제10820호	4차 개정 법률 제10629호	개정안
제·개정 일	2004. 3. 22	2005. 3. 31	2007. 7. 27	2011. 7. 14	2018. 12. 24.	-
조문 내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퇴직급 여금지급신 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하 며, 신청기 간은 이를 연장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퇴직급 여금지급신 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 며, 신청기 간은 이를 연장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퇴직급 여금지급신 청은 2008 년 6월 30 일까지 하 여야 한다.	② 제1항 에 따른 퇴직급여 금지급신 청은 2012 년 12월 31일 까지 하여야 한 다.	② 제1항 에 따른 퇴직급여 금지급신 청은 2021 년 6월 30 일까지 하 여야 한다.	② 제1항 에 따른 퇴직급여 금지급신 청은 2028 년 6월 30 일까지 하 여야 한다.
신청 기간	미시행	2005.7.1 ~2006.6.3 0	2007.7.27 ~2008.6.3 0	2012.1.1. ~2012.12. 31	시행일 ~2021.6.3 0	시행일 ~2028.6.3 0

□ 지난 4차례의 특별법 개정 연혁을 보면, 1차부터 3차까지의 신청기간은 6개월~1년 정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4차 신청기간은 약 2년 6개월이 부여됨.

국방부는 이번 개정에서 지급신청 기간을 3년으로 확대 연장하여 미신청자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법적 안정성 및 업무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약 3년이 적정한 지급신청 기간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개정안의 입법 시에는 이번 5차 연장을 통해 미신청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퇴직급여금 지급업무가 완료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지급대상자에게 적극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동 법률의 부칙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퇴직급여금 신청기한이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면, 퇴직급여금 지급심의·결정통지·재심의 등과 연계된 위원회의 활동은 2029년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음.

[퇴직급여금 처리 절차]



※ 재심의 신청 시 최종심의 및 결정까지 추가 4개월 소요

추가적으로, 동 특별법 제15조4)에서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3년을 감안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시점인 2032년 6월 30일 (2029. 6. 30. 부터 3년 경과 시점)까지 지급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존속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임.

4)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소멸시효)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퇴직급여금 신청에 대한 개별 안내가 제한됨에 따라, 신청기간 중에는 몰랐다가 기간 경과 후 지급 신청을 하거나 신청기간 종료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바, 신청기간 연장 및 추가 지급을 통해 참전유공자 보상을 확대하고 국가책임을 이행하는 등의 측면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임.
- 한편, 부칙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 접수 재개를 위해서는 조직 및 인력 구성, 준비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기 보다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또한,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기존 부칙 제2조의 위원회의 유효기간을 2025년 6월 30일에서 203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이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개정하는 경우에 적절한 방식임.

그러나 기존 위원회의 존속기한(2025년 6월 30일)이 이미 만료하여 현행법상의 위원회는 현재 존속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의 부칙에서 제2조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2032년 6월 30일)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수정의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위원회 존속기한 만료 후 개정)
법률 제16029호 1959년 1 2월 31일 이전에 퇴직 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 ① (생략) ② 위원회는 <u>2025년 6월 30일까지</u> 존속한 다.	법률 제16029호 1959년 1 2월 31일 이전에 퇴직 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u>2032년 6 월 30일</u>----- -----. 부칙 이 법은 <u>공포한 날</u>부터 시 행한다. <u><신 설></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부칙 <u>제1조(시행일)</u> 이 법은 <u>공 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u>부터 시행한다. <u>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 ① 국방부장 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 를 구성하여야 한다.</u> <u>② 위원회는 2032년 6 월 30일까지 존속한다.</u>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개정안은 퇴직급여금 지급신청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부칙에서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비용추계서

개정안에 따라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을 2028년 6월까지 연장하고 위원회 운영기간을 2032년 6월까지 연장할 경우,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추가재정소요는 퇴직급여금, 인건비, 운영비 등에 144억 300만원(연평균 20억 5,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계	연평균
퇴직급여금	941	3,764	2,823	2,823	1,882	753	188	13,174	1,882
인건비 등	154	157	161	165	169	174	178	1,159	166
운영비	10.2	10.4	10.6	10.8	11.0	11.2	5.7	69.9	10
합계	1,105	3,932	2,995	2,999	2,062	938	372	14,403	2,05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9.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 자구심사 내용

해당 없음.

[붙임] 1.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 안 자 : 국방위원장

수정이유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5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미 만료되어 부칙 개정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수정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위원회는 2032년 6월 30일까지 존속토록 함(안 부칙 제2조 신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법률 제16029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중 “2032년 6월 30일”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2025년 6월 30일”로 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203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법률 제16029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 ① (생략) ② 위원회는 <u>2025년 6월 30일까지</u> 존속한다.	(현행과 같음)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u>2032년 6월 30일</u>----- --. 부칙 <u>이 법은 공포한 날</u> <u>부터 시행한다.</u>	(개정안과 같음)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 ① (개정안과 같음) ② -----<u>2025년 6월 30일</u>----- --.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법</u> <u>은 공포 후 3개</u> <u>월이 경과한 날</u> <u>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위원회의 구성</u> <u>및 존속기한) ①</u> <u>국방부장관은 이</u> <u>법 시행 이후 1</u> <u>개월 이내에 위</u> <u>원회를 구성하여</u>

		<u>야 한다.</u> <u>② 위원회는 2032</u> <u>년 6월 30일까지</u> <u>존속한다.</u>
--	--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2021년”을 “2028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203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신청) ① (생 략)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은 <u>2021년</u> 6월 30일까 지 하여야 한다.	② ----- ----- <u>2028년</u> ----- -----.